

의안 번호	2517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p> <h1 style="text-align: center;">심사보고서</h1>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2. 4.(목) 김태욱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4.(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7.(수)

2. 제안설명 요지 (김태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가. 검토사항

○ 제정배경

- 최근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검토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설명함.
- 디지털 전환 지원(안 제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5가지의 사업을 명시화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디지털 매니저 운영 지원(안 제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매니저 운영 등 필요 예산 지원 항목 및 사무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
- 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안 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 범위내 시설 현대화 사업 연계 규정 마련
 - 구청장의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운영 실적 및 성과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규모, 지원 범위 조정 가능 명시
- 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안 제6조)
 -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활용으로 청년 상인 창업 활동 촉진될 수 있도록

록 본 조례에 따라 사업 연계 지원 가능 규정 마련

- 디지털 전환 공동배송센터 등 지원 과정에서 지역청년,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마련
-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 연계 지원 규정 마련
- 재정지원(안 제7조)
 -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비용 예산 범위지원과 지원금의 교부, 정산 관리에 관한 기준 규정
-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8조)
 - 디지털 전환 및 공동배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규정 마련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소비 패턴과 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흐름에 맞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 배송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상거래 현대화 촉진과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조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와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지원, 디지털매니저 운영 지원, 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청년상인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재정지원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④ 상인회에서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해야 한다.